

온천공보호구역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온천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용어설명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온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온천법」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 3만㎡이내로 한다.

관련법규

온천법,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온천 온천공보호지구

참고

-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From:
<https://www.conschoo.co.kr/> - DB World

Permanent link:
<https://www.conschoo.co.kr/%EA%B1%B4%EC%84%A4%EC%9A%A9%EC%96%B4/%EC%98%A8%EC%B2%9C%EA%B3%B5%EB%B3%B4%ED%98%B8%EA%B5%AC%EC%97%AD>

Last update: 2016/04/07 03:59

